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(안 제3조)
-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(안 제5조)
-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.
-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각 호에 예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가 내실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’은 도내에서 운영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.
-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부서의 협의와 상위법령 저촉여부 검토, 입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, 특별한 의견이 없어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